

보암약관(군산)

四

부록

단제기 국립극장

카드 사례 | 맘 흐트러짐 |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복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액

의사자고 사랑 축복 약판

서포터즈가 팀(팀·기획)을 관리하는 팀(팀·기획)을 나눈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특별약관

五
卷之三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자금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지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정: 계약 철약일 이후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험 세외, 보험금 산정,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를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종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뿐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시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범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정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별 최저 지급률을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될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살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입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등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클라이머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헬글라이딩, 수상보트,
페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축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암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승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등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조의 의견에 따르기
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
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기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
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기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품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계율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두렷한 우함의 증거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사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교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전단계약의 경우 징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행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전단서 유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기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 낙첨, 보험료 할증 등)을 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제3단계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품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청약예금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정약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로 반환해 번호로 번호로 번호로는 보험계약대출이금을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금을 연단위 복리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음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거나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일정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금'을 연단위 복리로 계약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금'을 연단위 복리로 계약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부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부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차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등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호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에

한국(한국) | 제3총회 | 전통에는 서예 티나(타나)를 전통(전통)에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괄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괄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로 해당하는 보험료 미 보수를 청구합니다.

[로열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혜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악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판 보충료의 납입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인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제1회 낙첨금을 낸 날로 간주된다.

④. **부록 5. 보장기기의 유통 계약을 통하여**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제15조(일월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3. 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시유가 발생할 때까지 전단을 벌지 않은 경우, 다만, 전단계약에서 전단을
벌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시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연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할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별로 증빙서류를 연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날기일】 계약자가 제2호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020-03-25 / 2020-03-25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호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또한 수의사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의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등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원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호령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과(특속)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납부금을

들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하자도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호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호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호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세-1정에 따라 애지세력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항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경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부활(호력회복)⁽³⁾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당보관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등위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세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이전한 보험계약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에게 배상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지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수지자인 부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의 통지를 보험수지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품목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호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호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품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품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품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일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증대서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양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번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피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피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년으로 계산한 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유효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전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둘러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일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조(증대서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4.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이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자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증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지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증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0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는 보험수지자에게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지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 제1항의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헥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④ 제1항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일종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옹인, 동거인, 속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지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 전쟁, 족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병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⑤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헥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지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 제1항의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대중교통이용증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지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 제1항의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③ 제1항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④ 제1항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를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컨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1호 내지 3호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학살, 내란, 사변, 폭동
3. 차에 텁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5.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6.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2]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급별 내용

상해급별	상해내용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노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앙구 피열로 인구 재흡출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4. 품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동맥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5. 삼_ip을 시행한 상태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출안정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태(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합니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바구니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11. 비구 골절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절은 제외한다)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태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태

2급	1. 노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3급	2. 흉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4급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죽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4. 신경 피열로 수술한 상해
6급	5. 척주 손상으로 를 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7급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울성 척주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자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8급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급	8. 전원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급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1급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급	11. 대퇴 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고파 분쇄 골 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3급	12. 솔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4급	13. 하토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5급	14. 시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6급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절은 제외한다)
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출관절의 전장 및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
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노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안정성 주체 골절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제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제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상완을 간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7. 요골 굴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6. 상완신경총 왼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멀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멀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8. 상완골 경부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2. 수근부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장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굴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이저 골절을 말한다)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굴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문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전완부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오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전열골절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슬개골 골절
18. 골반화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끌 골절을 포함한다)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그 뿐의 족근골 골절(거금 및 종골은 제외한다)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4. 종족족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2. 하퇴부 원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6. 족근부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왼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시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고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통합술을 시행한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멀초 신경 손상으로 복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 뇌순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증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31. 사지의 주요 멀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지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정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자침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영역	내용	금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 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균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
1. 뇌순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증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정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자침술을				

	<p>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황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강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두부	<p>가. "뇌순상"이란 국소성 뇌순상인 외상성 두개경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월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체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체도는 진정자로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체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삼관이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 coma)와 반혼수(semicomare)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죽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에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산행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부동증제하, ③심장호소처증기(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p>
상하지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시지 골절에서 별도로 삼례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가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밀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제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티.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다른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나.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상지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근, 전, 인대 파열"이라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전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합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에 적용한다.</p> <p>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6급의 전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아. 전봉 새골간 관절 탈구, 관절남 또는 전봉 새골간 인대 파열은 전봉 새골인대 및 오구 새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전봉 새골인대 및 오구 새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자. 주요 등급 또는 정맥 파열로 통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등급 또는 정맥 수술을 통한 병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라 2부위 이상의 주요 등급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p>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p> <p>다. 슬관절 심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심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p>
하지	<p>가. 양측 자끄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합하지 않는다.</p> <p>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p> <p>다. 슬관절 심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심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p>

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축부인대 등시 파열, 심자인대와 축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등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후파이 단독 골절 시 측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측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속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원전파열에 준하는 과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차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폭발·화재·불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지자에게 요청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폭발, 파열 및 화재(여기 포함)사고
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불교·침강 또는 사태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불교·침강 또는 사테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놓고 놓고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깊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품교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깊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③ 사테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1호 내지 3호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학살, 내란, 사변, 폭동, 테러, 흉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지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의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흉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

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태풍 2.홍수 3.호우 4.강풍 5.폭랑 6.해일 7.대설 8.낙뢰 9.가뭄 10.지진 11. 홍사 12.조류대발생 13.조

수 14.화산활동 15.일사병 및 열사병(67.0) 16.한파

③ 제2항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성폭력범죄상해발생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상해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가) 제297조(강간)

나) 제298조(강제추행)

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라) 제300조(미수범)

마)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강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강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카) 제6조 특수강간 등

타)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파)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강음 등

하)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거) 제9조 강간 등 성해 치상

너)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녀)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리) 제12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악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악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악식기소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학살,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종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② 위 제1항에서 농기계로 힘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면 증생진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개정 2016. 9. 6.>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동력취출장치, 전인장치 및 작업기 승강장치를 갖추고 전인형, 장착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연결하여 경운(耕耘), 경지(整地), 운반 등 농작업(農作業)을 수행하는 엔진출력(규격·성능 설명서에 기재된 출력을 말한다) 15kW 이상인 승용자주식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에서 벼·보리·콩·유채 등과 같은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선별하는 장치가 부착된 승용자주식(乗用自走式) 수확기계
4. 동력이양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식부(植付)장치 및 운전조작장치 등을 갖추고 모를 농에 옮겨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승용자주식[부분경운형 및 멀칭겸용형을 포함한다] 또는 보행형 이양기계
5. 동력이식기	농경지에서 배추, 고추, 달배, 인삼, 파, 양상추 등과 같은 농작물을 이식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식부장치, 구절(構切)장치 및 복토장치를 갖춘 자주식 또는 부착형 이식기계
6. 농업용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난방기계 가. 고체연료 난방기: 다음의 고체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인 온풍기(덕트 접속 온풍기, 흔합열원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열원 중 두 가지 이상의 열원이 결합되어 동시에 또는 순차(교대) 작동이 가능한 형태의 온풍기(덕트 접속 온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온수보일러 바. 그 밖의 열원을 이용한 난방기: 가스 및 액화가스, 지

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은수보일러.

- 1) 석탄(구멍탄, 무연탄, 갈탄, 코크스 등)
- 2) 목재 침, 목재 브리켓 또는 목재 펠릿(정형화된 모양의 연료만 해당한다)
- 3) 목분
- 4) 왕겨 또는 왕겨 펠릿
- 5) 가죽분뇨 고형연료(정형화된 모양의 연료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고체연료, 다만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높은 비닐, 플라스틱 침 등을 제외한다.

나. 유류 난방기: 등유, 경유, 부생연료유, 중유 등 유류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정체난방능력 210MJ/h 이상의 난방기로서 덕트 접속 온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로 열교환기가 있는 온풍식 또는 온수·온수 겸용식 난방기계

- 다. 전기 난방기: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다음의 난방기
 - 1)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하는 덕트 접속 온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온풍식 또는 온수식 난방기계
 - 2)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 제어가 가능하고, 발열체로부터의 회색 또는 회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난방기계

마. 흔합열원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열원 중 두 가지 이상의 열원이 결합되어 동시에 또는 순차(교대) 작동이 가능한 형태의 온풍기(덕트 접속 온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온수보일러
바. 그 밖의 열원을 이용한 난방기: 가스 및 액화가스, 지

<p style="text-align: center;">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는 난방기계</p> <p>7. 농산물건조기</p> <p>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의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건조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냉장점용식을 포함한다)</p> <p>가. 전기히터 또는 유류비너와 송풍장치를 가진 건조기 나. 전기히터 또는 유류비너와 원적외선방사체를 가진 건조기</p> <p>다. 체습성농장치를 가진 냉풍식 건조기 라. 히트펌프식 건조기</p> <p>마. 전기흔합식 건조기</p> <p>8. 농산물저장장치</p> <p>고</p> <p>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저장장기 또는 세</p> <p>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흰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p> <p>9. 가정용 도정기</p> <p>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0.59kW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된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반기</p> <p>가. 승용형 동력운반차</p> <p>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300kg 이상 10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1.0㎡ 이상일 것</p> <p>나. 보행형 동력운반차</p> <p>1) 최고주행속도: 7km/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 이상일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는 난방기계</p> <p>11. 농업용 로더 (loader)</p> <p>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작업기</p> <p>12. 농업용 굴착기</p> <p>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고랑·두둑 성형, 중경(中耕),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 다양한 관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p> <p>가. 승용형 관리기: 텁개엔진의 최대출력이 15kW 미만이고 최고주행속도가 15km/h 이하이며, 최저 지상고(地上高)가 400mm 이상으로 설계된 2축 이상의 차축 또는 궤도를 가진 승용자주식 관리기계</p> <p>나. 보행형 관리기: 최대속도가 7km/h 이하이고 차축이 1개 이상인 보행자주식 관리기계(차축경운형을 포함한다)</p> <p>13. 관리기</p> <p>퇴비, 분밀비료, 임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p> <p>가. 자주형: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차주식 비료살포기</p> <p>나. 부착형 또는 견인형: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p> <p>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p> <p>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p> <p>나. 상온통풍저장형 건조기</p>
---	---

16. 농업용 고소작업 차(파수용 작업대 포함)	<p>파수작과(열매 층아내기), 가치치기 등의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및 아우트리거를 갖추고 2m 이상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한 자주형 작업차량(스페드스프레이어 등을 이용하여 아우트리거 없이 2m 미만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파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악에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p> <p>가. 원거리용 방제기</p> <p>대형 는 또는 발 등의 노지에서 한 방향으로 악액을 분출하는 승용자주형, 전인형 또는 텁재형 방식의 방제 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한다.</p> <p>나. 주행형 동력분무기</p> <p>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방제기체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가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형의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p> <p>다. 스피드스프레이어</p> <p>파수원 등에서 150도 이상의 방향으로 동시에 악액 분출이 가능한 자주형 또는 부착형 형식의 방제기체로서 승용자주식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식의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가 7km/h 이 하여야 한다.</p> <p>라. 무인자동방제기</p> <p>특정 시설을 설치하여 고정경로를 이동하게 하거나 고정 설치하여 무인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방제기계</p> <p>마.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연무기, 무인항공방제기 및 원격조정형 동력분무기</p> <p>조사료(粗飼料), 목재 등을 폐쇄하는 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폐쇄기계</p>
-------------------------------	---

19. 농업용 톱밥제 조기	<p>목재를 사용하여 톱밥을 제조하는 자주형 또는 부착형의 톱밥 제조용 기계</p> <p>엔진, 또는 전동기 등의 동력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공급 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보관시, 세척통회전 또는 고압분무 등의 방식으로 채소류 및 과실류를 세척하는 기계</p>
20. 농산물세척기	<p>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보관시, 세척통회전 또는 고압분무 등의 방식으로 채소류 및 과실류를 세척하는 기계</p>
21. 동력예취기	<p>주행장치, 진자리장치 및 예취(刈取)장치를 갖추고 왕복식, 로터리식, 플레일식 등의 방식으로 곡물 및 두류를 절단. 수확하는 승용자주형 또는 보행형 방식의 예취기계</p>
22. 동력제초기 [모우어(mower) 포함]	<p>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p>
23. 농업용 리프트	<p>창고 등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작업대)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을 운반 및 적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주식 적재기계</p>
24. 트레일러	<p>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운동기에 연결되어 전인되는 피전인식 운반기계</p>
25. 농업용 베일러 (baler)	<p>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묶는 자주식 또는 피전인식의 농업용 베일러(웹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p>
26. 농산물 결속기 (結束機)	<p>회海淀 또는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종량별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접착결속, 매듭결속, 꼬임결속, 포장결속 또는 과일봉지 결속 방식의 기계</p>
27. 동력질단기	<p>전동기,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칼날 등으로 농작물을 척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단기계</p>
가. 벗짚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bale)을 절단하는 결	<p>속벗짚 절단기계</p>
나. 마늘 또는 양파를 선별·포장하기 위하여 줄기를 절단	<p>기계</p>

		하는 줄기 절단기계
28. 랩피복기	다. 사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벗짚단, 청예우수수 등을 절단하는 동력 절단기계 벗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	
29. 동력수확기	감자, 마늘, 양파 등 땅속작물을 굽취 수확하거나, 염채류를 절단 수확하거나,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용 트랙터·동력경운기 등 자주식 원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수확기계	
30. 동력경운기	전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원동기계. 다만, 특수한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농가에서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배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치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배합기계로서 배합기 형식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인 사료용 배합기계(발효용 및 화식사료용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보리, 호밀, 콩, 옥수수, 목초, 마늘, 감자 등의 종자를 재배지에 파종하는 목적으로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등을 갖춘 승용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파종기계[어린묘(苗) 생육을 위한 육묘용 파종기와 벌씨를 직접 눈에 파종할 목적으로 설계된 자주식 또는 부착형 벼 직파기를 포함한다] 가축 사육시설에서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급이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사료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사료급이기계 또는 정치(定置) 상태에서 급이가 가능한 정치식 사료급이기계	
33. 사료급이기(飼料給餉機)	농산물의 접질을 칼날, 미찰판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급장치, 제폐장치 등을 갖춘 동력식 제폐기계	
34. 농산물제폐기	벼, 보리, 콩 등 수확작물 탈곡을 목적으로 공급장치, 탈곡장치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35. 동력탈곡기	장치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탈곡기: 자동탈곡기에 주행장치를 부착하여 포장(圃場)에서 이동시키면서 탈곡 작업을 하는 자식 탈곡기계
		나. 부착형 동력탈곡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 자식 원동기에 부착하거나 엔진, 모터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탈곡기계
36. 농산물선별기	파일, 구근, 채소 등의 농산물을 물성과 품질에 따라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으로 선별 분류하는 선별기계	
37. 국물작재함	벼, 보리 등 수확된 곡물을 농경지에서 저장·가공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결인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일시 보관·운반장치	
38.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동력이양기 등에 부착되는 전인되어 사용되는 배토기(培土機), 로터베이터(rotavator), 플라우, 구굴기, 비닐피복(被覆)기 등 농작업기계	
39. 농업용 컨베이어	주로 천동기 또는 엔진동력원을 이용하여 농산물 등의 상하차 또는 적재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컨베이어로서 이송 및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작업이 가능한 운반기계	
40. 계사용(飼舍用) 동력청소기	닭 사육시설(계사) 바닥에 깔린 왕겨, 품밥, 벗짚 등 위에 쌓여 있는 닭똥 및 것털을 수거·운반·배출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주행장치, 수거장치, 적재설비를 갖춘 충용자주식 동력청소기계	
41. 그 밖의 농업기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농업기계	

[별표1] 장해분류표

① 총칙

1. 장해의 정의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장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기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치유된 후라'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증절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밀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관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기락 ⑫ 흉복부정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후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걸어서 들보는 것, 여부 ② 치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번명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망막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복시(채마)를 들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뜨었을 때 등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외상이나 홍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선된 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작요율(凹陷) 등으로 의안마저 깨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깨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기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평정기준

-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무려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무려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8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및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무려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마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질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무려한 경우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ㅌ)
 -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말하는' 기능에 무려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의' 언어증후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차이의' 결손이란 차이의 상실 또는 차이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 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상실된 차이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차이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시고와 곤경 없이 새로운 차이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3) 신체의 일부에 블었다 때였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악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색상,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험을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악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text{cm}(1/2 \text{크기는 } 40\text{cm}^2, 1/4 \text{크기는 } 20\text{cm}^2)$, 6~11세의 경우는 $6 \times 8\text{cm}(1/2 \text{크기는 } 24\text{cm}^2, 1/4 \text{크기는 } 12\text{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text{cm}(1/2 \text{크기는 } 12\text{cm}^2, 1/4 \text{크기는 } 6\text{cm}^2)$ 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악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악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악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생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 외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불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두렷한 운동장애
- 4) 두렷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불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악간의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불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6) 심한 기형
 - 척추의 굴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 척추의 굴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축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침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침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수술하고 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침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 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악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침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침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평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치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걸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 (걸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평정기준

1) 관절부에 금속내고정률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률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석고통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운전 장애(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원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원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함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뱀목 이상을 앓았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앓았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앓았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실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무렸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무렸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틀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 1) 고정틀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봉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뱀목 이상을 앓았을 때'라 함은 뱀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작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정해지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지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① 원천 장애(관절군금)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률을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운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다. 관절의 관절면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1) 관절면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4) '무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관절면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2) 관절면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관절면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앓았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앓았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앓았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앓았을 때 또는 두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앓았을 때 또는 두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앓았을 때 또는 두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월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잊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잊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잊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잊었거나 뺏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웨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기능영역의 1/2 이 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잊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잊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잊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잊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잊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잊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잊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잊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잊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잊은 때라' 함은 죽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잊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잊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악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쇄장의 전부를 절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절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잊었을 때
- ④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악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절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절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ها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8) 악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악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노출증, 노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별명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 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 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치매

① '치매'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신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뇌(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오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악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재권적 근거

⑥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⑦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에 한다.

⑧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호장애, 공포장애, 긴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⑨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절여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사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인정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활치료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과정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단하여 편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식사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투브나 점정액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을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비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설을 돋기 위해 설치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실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비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밟 수 있는 상태(3%)
옷 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해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짊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기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경무원 등의 신호를 우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우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우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위치기기의 빛발·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개어 들기의 금지를 우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위치기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횡단보도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증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증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면허증에 운전면허 또는 건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솔에 쭉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 하여 악물의 영향으로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주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삼骻(三轔)에 이르게 한 경우

상기와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